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9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의원)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광단지조성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특례의 신설 여부에 있어서는 타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데, 관광단지조성사업은 타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면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